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항공안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드론의 안전한 운용을 위해 1999년 「항공법」에 근거하여 장치 신고 제도를 도입한 이후 드론 활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21년에는 신고 대상을 사업용은 모두, 비사업용은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한 경우로 확대한 바 있음.

최근 드론 기체뿐 아니라 카메라 등 임무장비 기술도 발전하면서 영상 촬영, 시설 점검, 배송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되고, 취미·레저 등 개인 여가 활동에도 널리 사용되는 등 드론이 빈번하게 사용되는 추세임.

반면, 드론이 일상에서 널리 활용되면서 사고·불법 비행 등으로 안전 및 사생활 침해 등 안전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비사업용으로 이용되는 계류식 무인비행장치나 2kg 이하의 무인동력비행장치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불법 비행이나 추락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체, 조종자 등 주체를 파악할 수 없는 등 관리상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체 신고, 비행 승인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청자 신원, 자격 여부 검증 등을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필요성을 감안하여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주요내용

가.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의 신고 대상 확대(안 제24조)

불법비행 및 사고 등에 적시 대응하여 국민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한
운용환경 마련 등 체계적 드론 관리를 위해 신고대상을 확대

나. 고유식별정보 처리 사무의 범위 추가(안 제29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비행 승인에 관하여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심사 대상 여부 사전 검토 요청

대통령령 제 호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2킬로그램”을 “250그램”으로 한다.

제29조에 제5호의2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법 제122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127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등에 관한 사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상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24조제3호·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롭게 신고대상에 포함되는 무인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24조제3호·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해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법 제1 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항공사업 법」에 따른 항공기대여업·항 공레저스포츠사업 또는 초경량 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24조(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 ----- ----- ----- -----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계류식(繫留式) 무인비행장 치		<삭제>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무인동력비행장치 중에서 최 대이륙중량이 <u>2킬로그램</u> 이하 인 것		5. ----- ----- <u>250그램</u> ----- ---		
6. ~ 9. (생략)		6. ~ 9. (현행과 같음)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 토교통부장관(제26조에 따라 국 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 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 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 ----- ----- -----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를 처리할 수 있다.

1. ~ 5. (생략)

<신 설>

6. (생략)

<신 설>

1. ~ 5. (현행과 같음)

5의2. 법 제122조에 따른 초경
량비행장치 신고 등에 관한
사무

6. (현행과 같음)

7. 법 제127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등에 관한 사무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연 락 처	(044) 201 - 4315